

의안번호	2200314
의 회 인	한병도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7.
추계번호	24A0778

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,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1억 8,600만원, 2029년에 1억 3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7억 2,800만원(연평균 1억 4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기본계획 등의 수립 (안 제5조)	50	—	—	—	—	50	10
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(안 제6조)	5.5	5.5	5.5	5.5	5.5	27.5	5.5
통계작성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(안 제9조)	130	130	130	130	130	650	130
합계	186	136	136	136	136	728	146

주: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)	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(혁신클러스터의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4	안 제9조(통계)	·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분류체계를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작성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)	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함.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함(제1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11조(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및 환수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6	안 제12조(생활소비재산업인력의 확보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3조(생활소비재산업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(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15조(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생활소비재기업 및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과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 계획 등의 수립)	○	—
2	안 제6조(생활 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)	○	—
3	안 제8조(혁신 클러스터의 지원)	X	혁신클러스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4	안 제9조(통계 작성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)	○	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에 한해 추계함
5	안 제11조(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및 환수)	X	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6	안 제12조(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)	X	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관련 사업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7	안 제13조(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)	X	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관련 사업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8	안 제14조(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)	X	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관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관련 사업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9	안 제15조(해외진출 및 국제 협력 지원)	X	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			
			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하기 어려움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</td><td>2024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사업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</td><td>3억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	2024예산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	3억원									
소관	현행 사업	2024예산									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소비재산업수출기반구축)	3억원																
10	안 제16조(생활소비재기업 및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)	X	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생활소비재기업과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계하기 어려움 <table><tr><td>소관</td><td>현행 사업</td><td>2024예산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사업(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)</td><td>14억원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사업(3D융합안경테제조기반구축)</td><td>2.2억원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사업(퍼스널케어융합얼라이언스육성)</td><td>3억원</td></tr><tr><td>산업부</td><td>생활산업경쟁력사업(K-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)</td><td>1.6억원</td></tr></table>	소관	현행 사업	2024예산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)	14억원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3D융합안경테제조기반구축)	2.2억원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퍼스널케어융합얼라이언스육성)	3억원	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K-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)	1.6억원
소관	현행 사업	2024예산									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)	14억원									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3D융합안경테제조기반구축)	2.2억원									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퍼스널케어융합얼라이언스육성)	3억원																
산업부	생활산업경쟁력사업(K-아이웨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)	1.6억원															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요인에 한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제정안의 주요 재량지출의 예산 편성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기본계획 등의 수립(안 제5조)
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할 때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

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- 유사 연구용역 사례로는 「생활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」(2023년, 4,000만원), 「섬유패션산업 경쟁력 분석 및 활력제고 방안 연구」(2018년, 5,000만원) 등임

[표 3]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기본계획 등의 수립 (안 제5조)	50	—	—	—	—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

-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경우 회의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(산업통상자원부장관)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, 회의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 위원 수는 과반인 11명으로 가정함
- 안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사항¹⁾을 고려하여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는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1회 25만원²⁾으로 가정할 경우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550만원(11명×2회×25만원)으로 추계됨

1) 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
4.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(기획재정부, 「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」).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

[표 4]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(안 제6조)	5.5	5.5	5.5	5.5	5.5	27.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통계작성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(안 제9조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활소비재산업의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유사 사례를 참고할 때 안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의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1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－ 유사 사례로는 “2023 생활소비재산업실태조사”(한국디자인진흥원, 2023년 1억 6,000만원), “2023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및 실태조사”(산업연구원, 2023년 1억 500만원) 등임

[표 5]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통계작성·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(안 제9조)	130	130	130	130	130	6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